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조경태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5845

발의연월일: 2024. 11. 25.

발 의 자:조경태·이헌승·서천호

백종헌 · 김상욱 · 김용태

곽규택 · 최형두 · 박수영

서지영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산림청장으로 하여금 산사태예측정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산사태예방기관의 장 등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하는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음.

산림청에 따르면 최근 5년(2019년~2023년) 동안 연 평균 피해면적은 462ha로 이전 5년(2014년~2018년) 54ha에 비해 8배 증가하였고, 최근 5년 동안 사망자가 25명 발생하는 등 산사태로 인한 피해 규모가 커지고 있는 추세로, 산사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예방과함께 인명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주민대피 체계를 더욱 견고하게 할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산림청장은 산사태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산사태예측정보를 지체 없이 지역산사태예방기관의 장에게 제공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산사태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임(안 제45조의6제1항).

법률 제 호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산림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의6제1항 중 "산사태예측정보"를 "산사태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산사태예측정보"로, "지역산사태예방기관의 장"을 "지체 없이 지역산사태예방기관의 장"으로, "제공할 수 있다"를 "제공하여야 한다"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5조의6(산사태예측정보의 제	제45조의6(산사태예측정보의 제
공 및 산사태위기경보의 발령	공 및 산사태위기경보의 발령
등) ① 산림청장은 <u>산사태예측</u>	등) ① <u>산사태가</u>
<u>정보</u> 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산사
바에 따라 <u>지역산사태예방기관</u>	<u> 태예측정보</u>
<u>의 장</u> 등에게 <u>제공할 수 있다</u> .	
	역산사태예방기관의 장
	- <u>제공하여야 한다</u> .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